가 피부 질환



41 건설자재보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알레르기접촉성피부염

성별 남성 나	이 61세	직종 건설자재보수직	직업관련성 높음
---------	--------------	-------------------	-----------------

1 / 개요

근로자 ○○○은 2003년부터 약 11년간 □사업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후 입고된 유로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청소 작업을 했다. 또한 부수적으로 굴곡이 생긴 금속파이프를 교정하거나, 금속파이프를 크기에 따라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년 6월 이후 얼굴부위의 피부염이 발생하였고,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였으나 악화되자 2013년 11월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 결과상 알레르기성 접촉성피부염을 진단받고 치료받았다.

2 작업환경

○○○의 주 업무는 유로폼 세척업무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유로폼이 입고되면 망치나 도구로 시멘트나 쇳가루를 털어내고 박리제로 코팅한 후 적재하는 작업을 주로하였다. 그 외 부수적으로 파이프 교정 및 쇠파이프 절단 작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였으며, 근로자는 유로폼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에서 시멘트, 모래 외 다양한 시멘트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피부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분진)

5 의학적 소견

○○○은 음식 또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는 없었고, 특이 병력은 없었다. 13년전 금연하였고, 2012년 6월 이후 얼굴부위의 피부염이 발생하여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였으나 악화되었다. 2013년 11월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시행한 첩포 검사 결과상 니켈에 대하여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피부조직 검사 결과에서 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을 진단받고 치료받았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피부병변의 양상과 피부조직검사결과에서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에 부합하였고, 의무기록과 증상양상에 근거하였을 때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피부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티어스의 7가지 기준을 적용하였 을 때, 접촉피부염의 임상양상, 작업장에서의 잠재적인 알레르기 물질 노출, 피부염분 포와 노출과의 일치성, 노출과 증상발생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비직업적 노출의 배제, 노출중단 후 피부염의 호전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알레르기성접촉 피부염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끝.